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40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 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라.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사항 (안 제10조)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8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구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 	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 	10							
상인회 등록음식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 	10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 	10							
거리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10							
거리의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70%;">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0</td> <td rowspan="3"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td> </tr> <tr> <td>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30	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10	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10	30
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30							
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10								
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10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			
거리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치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			